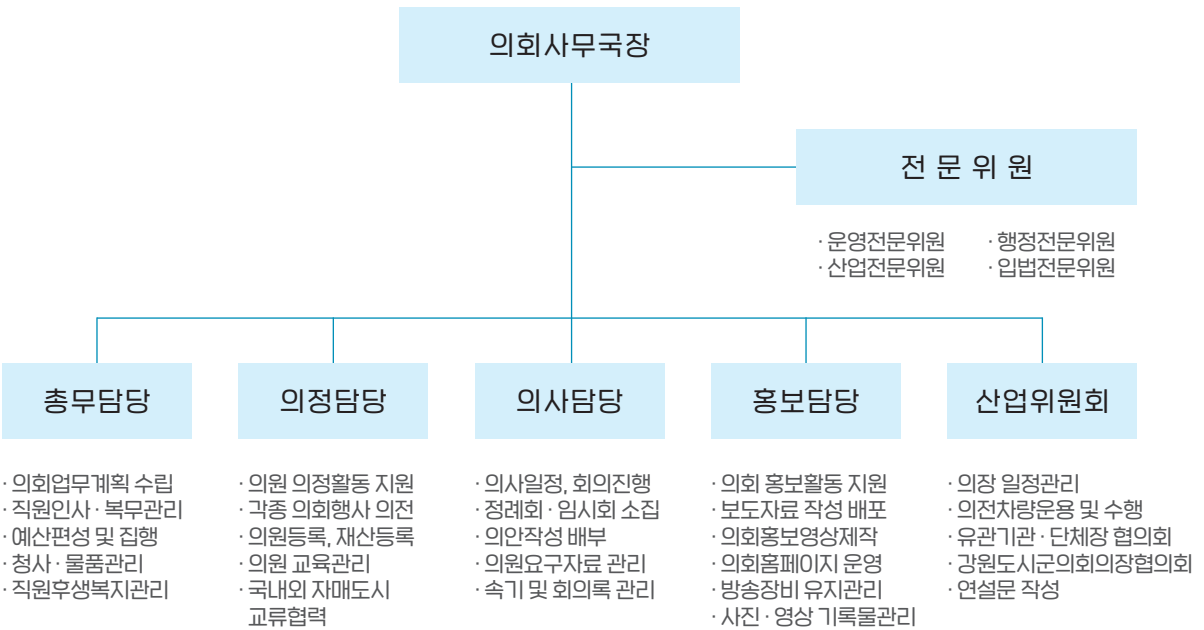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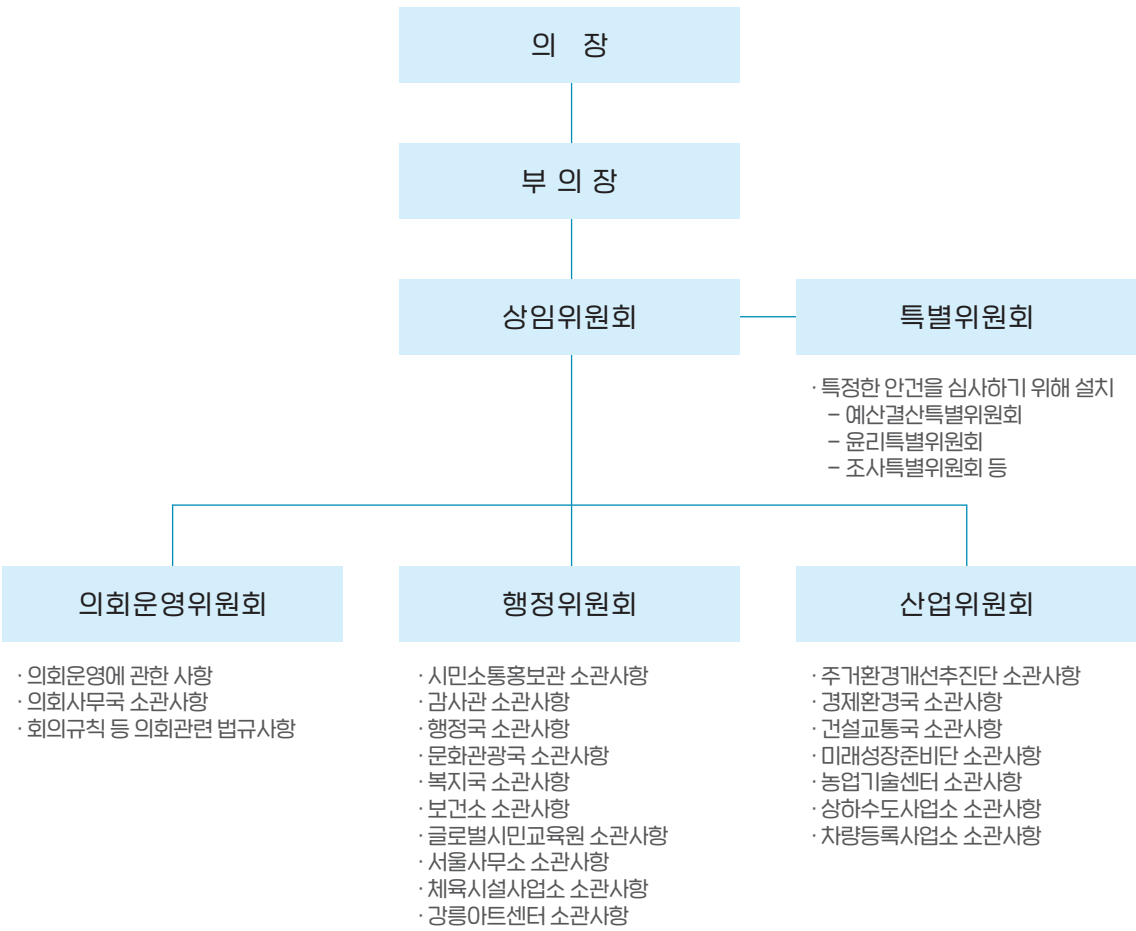




2022년도 강릉시의회 월별 의회운영 기본일정(6~12월)

월 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6월	제299회 임시회 6.20.~6.27. (8일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6.13. 폐회 중 운영위
7월	제300회 임시회 7.1.~7.4. (4일간)	◦ 제12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원 구성 - 의장단(의장, 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운영, 행정, 산업) 선거	
	제301회 임시회 7.21.~7.29. (9일간)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7.14. 폐회 중 운영위
9월	제302회 정례회 9.1.~9.23. (23일간)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결산 ◦ 시정 질문 및 답변	8.25. 폐회 중 운영위 9.9.~9.12. 추석 연휴
10월	제303회 임시회 10.21.~10.28. (8일간)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 ◦ 시장제출 및 의원발의 안건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10.14. 폐회 중 운영위
11월 ~ 12월	제304회 정례회 11.25.~12.19. (25일간)	◦ 2023년도 당초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시정 질문 및 답변	11.18. 폐회 중 운영위



의안이란?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고,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며, 수정을 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며, 승인안이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수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구 분	발 의	의 결
조례안 등 일반안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 ※주민 조례발안 제도 ·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 · 강릉시 주민 조례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청구권자의 1/70 (2022년: 2,654명)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조례안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 자격심사청구	· 재적의원 1/4 이상	·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의원징계요구	· 의장 · 모욕당한 의원 · 재적의원 1/5 이상 · 위원장 (소속위원 중 징계대상이 있을 때)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비공개회의	· 의원 3명 이상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제1차, 제2차)와 필요한 경우 의원(1/3 이상)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집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구 분	집 회 일	주 요 안 건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0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로 한다.)	· 결산서의 승인 ·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예산안의 심의·의결
임시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시	· 조례(안), 일반안건 등

🔧 본회의

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 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다.

🔧 위원회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 위원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청원을 심사·처리한다. 위원회 회의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원서 제출

- 시의회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 기재 후 서명날인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

회부심사 (소관위원회)

- 청원 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채택 (본회의)

-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보고 (시장)

- 시장은 청원처리 후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

통보 (청원인)

-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승인요구 (강릉시장)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예비심사 실시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하여 최종심사 실시

심의 의결 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집행부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활용된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1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위촉식(4.14.)



▲결산감사위원 현장방문(4.27.)